

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안 번호	1284
----------	------

2020. 3. 6.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2월 5일 이경선 의원 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2월 1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20.3.6. 상정·의결)

II. 제안설명 요지(이경선 의원)

1) 제안이유

- 2021년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 추진의 효율적·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개의 요건, 소위원회 신설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,

서울시의 전반적인 민간전문가 운영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도 불구하고,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되고 운영

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서울시장에 재량을 주고자 함.

2) 주요내용

- 운영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변경함(안 제10조제6항)
-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운영근거를 신설함(안 제10조의2 신설)
- 민간전문가 위촉방법, 업무범위, 대가지급 등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(안 제11조의2제4항)

Ⅲ. 검토보고 요지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(이하, 비엔날레)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, 2020년 2월 5일 이경선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해 2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“운영위원회 운영 개선” (안 제10조제6항, 안 제10조의2 신설)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⑤ (생략)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재적위원 과반수-----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<p>⑦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의2(소위원회의 운영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.</p> <p>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</p>

- 비엔날레 관련 위원회는, 주요 사항을 승인하는 조직위원회와 실무적 성격의 운영위원회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, 조직위원회는 구성된 적이 없고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조직위원회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,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토대로, 회의 개의요건을 강화하여 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이되,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실무적 성격도 유지토록 하려는 것임.
- 좀 더 살펴보면,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대부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요하는 것과는 달리, 비엔날레 운영위원회는 ‘매 회 6명 이상 위원 구성과 그 구성원 과반수 출석’, 즉,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(17명(당연직 9명, 위촉직 8명)) 중 3명만 참석해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.

이는, 운영위원회가 실무적 성격임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중 그때그때 회의 안전에 적합한 위원들로 구성하되 비교적 소수가 참석해도 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운영위원회의 실무적 기능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추정됨.

- 제2회 비엔날레 운영위원회는 최소 6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(붙임1), 비엔날레와 관련한 단독 위원회로서 운영위원회의 대표성 제고와 이를 위하여 개의를 조건을 강화하더라도(매회 구성원 과반수(3명) → 재적위원 과반수(9명)) 운영위원회 운영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.
- 또한, 이 개정조례안에서 소위원회를 신설토록 한 바, 홍보·전시 등 주요 현안 업무가 소위원회를 통해 밀도 있게 수행될 수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실무적 성격도 충분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아직까지 조직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직위원회의 존폐 여부를 포함하여 비엔날레 관련 위원회의 체계·운영 등이 전반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※ 운영위원회와 조직위원회 비교 (자료: 도시공간개선단)

구분	조직위원회(조례 제7,8조) (미구성)	운영위원회(조례 제9,10조) (‘17.5.18.~)
역할	- 사업계획, 예산 등 주요사항 승인	- 사업 및 예산계획 수립 등 실무
	·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· 민간 후원사업 및 수익사업 승인,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및 사용승인 등	·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, 예산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 · 총감독의 선정에 관한 사항, 관련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
구성	· 위 원 장 : 시장 · 부위원장 : 행정1,2부시장 및 외부전문가 · 위 원 : 총괄건축가, 시의원 및 외부전문가	· 위 원 장 : 시장이 임명 · 부위원장 : 위원중 호선 · 위 원 : 市간부, 시의원, 출연기관 대표, 외부전문가

“민간전문가 운영규정 보완” (안 제11조의2제4항)

현행	개정안
제11조의2(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·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) ① ~ ③ (생략) 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업무범위는 <u>시장이</u> 정한다.	제11조의2(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·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위촉방법,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</u> <u>따로 -----.</u>

○ 서울시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이하, 민간전문가 조례)에서 규정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은 민간전문가 조례 적용을 제외토록 되어 있는 가운데¹⁾,

이 개정조례안은 비엔날레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재량을 확대하려는 것임.

○ 민간전문가 조례²⁾ 및 관련 지침(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)에서는

1)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4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2)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7조(민간전문가의 위촉)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, 방송,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)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,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(서류·면접) 통해 민간전문가를 위촉
토록 하고 민간전문가 대가는 자문 건별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 반면,
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·디자인 전문가(큐레이터)는 관련 방침
및 협약에 따라, 각각 운영위원회 추천·선정 및 총감독 지명으로 위
촉되고 있고 대가는 일정 시점에 분할 지급됨으로써(붙임2) 민간전
문가 조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.

- 따라서, 이 개정조례안에서 비엔날레 관련 민간전문가의 위촉방법
및 대가지급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, 비엔날레 민간전문가 업무
의 특수성과 그 운영현황을 반영한다는 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. 일반자문 :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준용
2.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% 이내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6항 중 “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그 구성원 과반수”를 “재적위원 과반수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소위원회 운영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,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1조의2제4항 중 “업무범위는 시장이”를 “위촉방법,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</p> <p>① ~ ⑤ (생 략)</p> <p>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<u>매 회의마다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</u> <u>되,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</u> <u>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</u> <u>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 <p>⑦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</p> <p>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<u>재적위원</u> <u>과반수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0조의2(소위원회의 운영) ① 운영</u> <u>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</u> <u>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</u> <u>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</u> <u>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</u> <u>성하고,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</u> <u>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.</u></p> <p><u>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</u> <u>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</u> <u>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
<p>제11조의2(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·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)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 <u>업무범위는 시장이 정한다.</u></p>	<p>제11조의2(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·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위촉방법,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</u></p>

현행	개정안
	<u>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-----.</u>